

검토보고서

안건명	부서명	페이지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감사담당관	1

(2013. 11. 26)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은모]**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안 건 명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3년 11월 15일

나.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가. 2013년 11월 19일

4. 관련근거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8조

나.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옴부즈만 운영 가이드 라인(2013.2.4.)」

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음부즈만 제도 권고(2010.9.27.)」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동 조례안은 2008.2.29. 종전 「부패방지법」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 행정의 기능이 계속 확대 · 강화되고 있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기에는 제도상 어려운 점이 많았음.
- 이에 우리 구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관련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위법 ·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은 물론 마포구의 열린 행정을 통해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을 설치 ·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출된 것임.

< 주요내용 >

(1) 안 제3조(옴부즈만 구성)에서는

- 3명 이내, 공개모집을 통해 구의회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
- 임기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 관련 분야 전문가,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등

(2) 안 제4조(직무)에서는

- 구민 30명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가 옴부즈만에게 신청한 고충 민원의 조사 · 처리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서류의 열람,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상시적 청렴 감시 · 평가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건의 조사 · 처리

(3) 안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권한)에서는

-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 부서 등에 자료제출 등 요구권
-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 행정제도 개선권고 등 이행실태에 대한 확인 및 점검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관련규정에 따라 마포구 옴부즈만을 설치·운영하여 행정기관의 불합리한 제도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양자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약자의 위치에 있는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마포구가 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상위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민권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 가이드 라인(2013.2.4.)」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옴부즈만 제도 권고(2010.9.27.)」 사항에 저촉됨이 없고, 2013.10.4. ~ 2013.10.24.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우리 구 조례 규칙심의회를 거쳐 절차상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본 조례의 제12조제4항 - 고충민원의 접수(구민 30명 이상)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 제21조(청렴계약 감시·평가 대상) - 감시평가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마포구 및 소속행정기관, 마포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마포구의 사무위탁기관) 및 제24조(운영지원) -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력 및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규칙을 조속한 시일내 마련하여야 실질적인 마포구 옴부즈만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마포구 옴부즈만의 활동을 위한 운영비와 수당은 2014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 ④ 결원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34조(활동비 지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32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5조(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5조,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5조 및 제31조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6조(사무기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 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37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